

근로자 지원제도

1. 임신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
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

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

지원내용

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, 근로시간 단축의 이유로 임금 삭감은 불가능합니다.

※임신 후 13주 ~ 35주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주 15~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원(사업주를 통한 간접 지원)을 지원 받습니다.

지원방법

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,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,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(전자문서 포함)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

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
-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(근로감독과)